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소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1.

발 의 자 : 김소희 · 우재준 · 고동진
박덕흠 · 김미애 · 성일종
김상훈 · 김대식 · 김승수
김은혜 · 박충권 · 이헌승
김선교 · 강승규 · 조정태
엄태영 · 김예지 · 조지연
진종오 · 이종배 · 유용원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).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나 제2항에 따른 시간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-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4조제4호 중 “제14조제2항”을 “제1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확성기등 사용의 제한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4조(확성기등 사용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<u>경우에는</u>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경우나 제2항에 따른 시간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.
제2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	제24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14조제2항</u>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 부·방해한 자	4. <u>제14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